

1 사료분야 세제지원 추진대책 및 방안



이홍철 사무관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1. 최근 사료가격 동향

최근 지속적인 국제곡물가격 상승과 해상운임의 급등으로 국내 사료원료의 도입가격 상승 또한 계속되고 있다. 미국 Gulf 지역에서 한국으로 오는 해상운임비는 2002년 톤당 20~25불에서 최근에는 75~80불대로 급등하였으며, 국제 곡물재고와 생산량 감소로 미국산 사료용 옥수수의 국내 도착가격은 톤당 173불대로 전년 132불에 비하여 59%, 대두박은 톤당 313불대로 전년 208불과 비교하여 78%, 사료용 소맥은 185불로 전년 104불과 대비하여 50%가 각각 상승하였다.

이러한 사료곡물가격의 급등으로 사료업계는 지난 연말 9% 내외의 가격을 인상하였으나, '04. 3월 다시 14%대의 추가적인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곡물 시장의 수요증가와 해상운임 강세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사료곡물 가격도 높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사료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한 사료가격 안정화방안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요 해상운송비 변동현황

(단위: \$/톤, %)

	운송비						인상률	
	25~28	27~30	40~45	50~55	65~70	75~80	F/A	F/C
미국(Gulf)	25~28	27~30	40~45	50~55	65~70	75~80	192.5	82.3
중국	5.5~6.5	10~12	12~15	15~16	15~16	16~18	183.3	54.5
인도	25~30	30~35	40~45	43~46	43~46	45~50	72.7	11.7
동남아	18~20	20~23	23~25	25~30	25~30	28~33	60.5	27.1

* Gulf, 중국: 옥수수·소맥, 인도: 대두박·채종박, 동남아: 야자박·소맥피 등



주요 수입원료 도착단가 변동내역

(단위:\$/톤, %)

	미국				중국		일본	
	1/4C	1/4D	1/4E	2/4C	F/A	F/B		
옥수수	114.53	114.70	117.63	119.36	160.0	173.5	51.5	58.8
소 맥	97.7	104.2	119.4	125.4	169.0	185.0	89.4	77.5
대두박	206.8	208.3	224.2	223.2	290.0	313.0	51.4	50.3

2.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관세등 세제지원

이와 같은 사료곡물 도입가격의 급등에 따라 축산농가 및 배합사료업체의 경영여건을 안정시키고 사료가격 인상폭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수입사료의 할당관세 적용확대, 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세제지원 확대와 사료원료구매자금의 금리인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사료의 할당관세 적용확대 및 관세인하

할당관세(Assigned Tariff)는 물자 수급을 원활히 하고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며 유사 물품간 세율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수입품에 물리는 관세로서 특정 물품의 수입이 정부가 정한 일정 수량에 이를 때까지는 저율의 관세를 적용하고, 일정량이 초과되면 그 이후에는 기존의 실행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기본 관세율의 40% 범위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수입사료의 할당관세 적용은 '88년부터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매년 10~12개의 주요 사료품목에 대해 0~5% 내외의 적용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04년도 할당관세 운영 품목은 당초 옥수수(관세 0%), 대두(0%), 밀(1), 알팔파(1), 면실박(2), 겔보리(2), 소맥피(2), 매니옥 펠렛(2), 사료용 근채류(2), 동·식물성유지(5), 유장(8), 완두콩(2%)이 지정되었으나, 수입원자재인 사료곡물이 폭등하고, 가금인플루엔자, 광우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20% 이상 가격이 오른 수입사료 대해 할당관세적용을 확대 조치하여 3.9일부터 운영되도록 하였다.

신규 할당관세 품목으로는 호밀(관세1%)과 팜박(2%)이 지정되고, 소맥(1%→0%),

유장(8%→5%), 매니옥(2%→0%)은 관세가 인하되었으며, 소맥(155→200만톤)과 완두콩(16→45만톤)은 할당관세 한계수량이 증량되어 사료원료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 함은 물론 추가적으로 세액부담을 경감하였다.

2004년 품목별 할당관세 적용 세율 및 한계수량

0404	유장	사료용에 한한다.	5	35,000
0713	완두	사료용에 한한다.	2	450,000
0714	매니옥 (카사바)	펠리트상의 것으로서 사료용에 한한다.	0	470,000
1001	밀	사료용	0	2,000,000
1002	호밀	사료용에 한한다.	1	500,000
1003	겉보리	사료용에 한한다.	2	50,000
1005	옥수수	사료용	0	7,900,000
1201	대두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에 한한다.	0	1,390,000
1214	알팔파	사료용에 한한다.	1	수입전량
1518	동물성 또는 식물성유지와 그 분획물 및 이들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	사료용에 한한다.	5	56,000
2302	밀기울	사료용에 한한다.	2	620,000
2306	면실박	사료용에 한한다.	2	390,000
2306	팜 박	사료용에 한한다.	2	500,000

사료곡물의 무관세 적용 방안

관세법개정을 통한 사료원료에 대한 무관세 방안이 축산 생산자단체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사료의 무관세 적용은 WTO 도하아젠다협상(DDA)에서 사료뿐만 아니라 농산물 분야의 전반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DDA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유보시키고 있는 입장이다.

수입사료에 관세를 면세할 경우 연간 238억원 수준의 관세감면 효과가 있으나, 현재도 사료원료의 약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옥수수, 대두박, 매니옥, 밀은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0%로 운영되고 있으며, 여타 주요사료 원료도 1~2%의 저율의 관세를 적용하는 등 수입사료에 부과된 관세는 상당부분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경감된 것으로 판단된다. '03년 수입사료에 부과된 관세는 실행관세율(할당관세가 적용되지 않을 경



우 부과되는 관세율) 기준으로 약 892억원으로 추산되며, 수입사료의 할당관세 적용으로 654억원의 관세감면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수입사료에 대해 무관세 내지 영세율이 적용되면 양축농가의 사료비 절감효과와 할당관세 적용품목 선정 및 관련부처 협의에 따른 행정비용 축소효과가 예상된다.

3. 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세제지원 확대

사료분야에 적용되는 세제지원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으로 연간 약 4,500억원 수준의 세제지원으로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제10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이 정한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로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서 “대통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에 의한 농민, 즉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1. 개인, 2.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3.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중앙회, 5.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가축계열화사업자로 구분되어있다.

사료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경위

사료에 대한 첫 영세율 적용은 1995.10.1일부터 시작되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해 규정하는 부업규모 축산을 영위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료의 공급에 있어 가축별 사육두수에 따른 배합사료 공급량 및 공급절차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시 축산인들의 열망에 의해 이끌어 냈던 사료의 영세율 적용은 영세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전업규모 양축가나 계열화사업체와 같은 축산법인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95.5월 이후 축산업계는 지속적으로 재정경제원에 전업규모 및 축산법인에 대한 영세율 적용확대를 요청하였으나 세수감면과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1996.11월 부업규모 사업자의 축산경영 확대를 위해 농가부업규모의 120% 범위안의 축산업을 영위자로 그 대상을 일부 확대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사료의 부가가치세에 대

한 전면적인 영세율 적용은 1997년에 와서야 비로소 시행되었다.

'97년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인의 범위를 축산법인, 축협 등 생산자단체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대상 사료와 가축의 종류도 사료관리법과 축산법에서 정한 모든 사료와 가축으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97년 7월 1일부터 영세율 적용대상은 개별 축산농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농업인 또는 상근 임·직원의 출자지분이 당해 법인의 총 출자액의 2/3 이상인 축산업 주업법인, 가축계열화사업자, 농·축협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2002년 12월말에 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범위를 종전에는 “농민에게 가축을 위탁하여 사육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 사업자만 적용” 하였으나, “농민과 계약을 체결하여 가축·사료 등을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계약사육)하는 계열사업자”도 포함되도록 확대하였으며, 축산업 수입액의 범위도 확대하여 “계열주체가 직접 또는 계열농가의 가축과 일반농민이 사육한 가축을 가공·판매하는 경우도 축산업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고 “축산주업법인의 대상을 총매출액중 축산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90이상에서 100분의 70이상으로 완화” 하였다.

“가축계열사업가 사육하는 종축과 자축에 급여하는 사료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되며, 가축계열사업자가 농민과 계약을 체결하여 가축을 생산하게 하고 이를 재구매하는 경우에 자축 및 사료를 공급하고 받는 판매대금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축산업수입금액 및 총수입금액에서 각각 제외된다”고 재정경제부 조세예규로 해석하여 조치(04.2.25)함에 따라 일부계열업체의 조세감면 혜택이 확대되게 되었다.

〈사료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변천〉

○'95.10.1: 농가 부업규모의 축산농가(배합사료에만 적용)

—축종 및 규모: 젓소(20두), 소(30두), 돼지(200두), 닭(10,000), 산양(300), 면양(300), 토끼(5,000), 오리(10,000)

○'96.1.1: 부업규모의 120% 범위안의 축산농가(배합사료에만 적용)

—축종 및 규모: 젓소(36두), 소(36두), 돼지(240두), 닭(12,000)



- '97.7.1: 모든 개인 또는 축산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업주업법인, 가축계열화사업자), 농·축협(97.8 사료관리법상 사료)
 - 축종 및 규모: 사육규모에 상관없이 축산법상 모든 가축
- '02.12.30: 가축계열화사업자의 범위 및 지원대상 확대
 - 가축계열화사업자의 범위 확대: (중전) 농민에게 가축을 위탁하여 사육하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만 적용 (추가) 농민과 계약을 체결하여 가축·사료 등을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계약사육)하는 계열화사업자도 포함
 - 축산업 수입액의 범위 확대: (중전) 계열주체가 직접 또는 위탁농가에서 사육한 가축을 가공·판매한 경우에만 축산업 수입으로 인정 (완화) 계열주체가 직접 또는 계열농가의 가축과 일반농민이 사육한 가축을 가공·판매하는 경우도 축산업 수입금액으로 인정
 - 총 매출액중 축산업 수입액 비율 축소: (중전) 축산업 수입금액이 총 수입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완화) 축산업 수입금액이 총 수입금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사료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확대의 의의

'97년 당시의 조치로 국내 배합사료 가격은 약 9.1%의 인하효과가 발생하였다.

양축농민들은 기존에 감면받던 부업축산농가의 1,200억원에 추가적으로 2,280억원을 더해 모두 연간 3,480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축종별로 양계 5.6%, 육계 4.8%, 비육돈 4.5%, 우유 3.5%, 비육우 1.8% 생산비 절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세제지원 조치는 우리와 축산여건이 비슷한 아시아 지역의 일본이나, 중국이 소비세 및 영업세 명목으로 배합사료에 3~5%의 세금을 부가하고, 유럽의 주요 국가도 4~7%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을 감안할 때 축산물 수입개방 이후 국내 축산업의 붕괴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시키고 당시 축산물값 하락 등으로 시름에 처한 농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을 안겨준 조치로 평가받았다. 또한 영세율적용 대상을 상업상의 축산업인과 가축계열화사업체, 농·축협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향후 축산업을 이끌어 갈 전문경영체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효과로 이어져 우리나라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영세율 적용방법

사료 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세부담자인 사료제조업체나 대리점은 영세율 적용대상과 사료 공급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선 특례규정에서 1호, 2호, 4호에서 정한 개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축협 의 경우는 사료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별도의 확인절차는 없으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판매기록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외관상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상업법인과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록증을 확인·복사하여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

특례규정에서 3호와 5호로 규정한 사업법인 즉, 축산주업법인과 가축계열화사업자의 경우는 최종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축산주업법인 확인서를 교부받아 사료구매시 사료공급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축산주업법인은 특례규정에서 정한바와 같이 축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나 출자자로 구성된 법인이거나 농민에 의해 투자된 법인이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인이나 상시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이 2/3이상 주주 또는 출자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기업형태라도 법인설립 본연의 목적이 축산업을 통한 이윤창출이라면 양축농가의 경영과 다를 바 없다고 인정되지만, 외부자본의 비율이 1/3 이상인 법인은 당초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영세율을 적용하고자 했던 농어민의 의미에서 벗어나므로 세제혜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축계열화사업자는 우선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농민과 위탁 또는 계약사육 형태로 가축을 생산하고 이를 일괄적으로 도축·가공·유통하는 법인임을 시·도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특례규정 제2조제1항에서는 농민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축산업을 영위해야 하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은 번식이나 식육생산 등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여야 하지만, 계열화사업자는 사육 농가가 이를 대신하므로 시·도는 지정서 발급시 농가와 위탁·계약사육이 임시(임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해당 법인의 축산업 수입금액이 총 수입금액의 70/100 이상으로 축산업 주업법인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가 직접 전년도 연말결산시 제출한 재무제표 등을 참고하여 확인한다.



4. 향후 보완방향

'97, '02년 특례규정개정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축산업주업법인의 요건을 완화하였으나, 사료영세를 적용에 포함되지 않는 양돈협회 소속의 종돈능력검정소, 양계협회 소속의 종계능력검정소에서 종축능력검정 등 가축검정기관의 사용되는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를 적용확대 개정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경영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영세를 적용확대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축산물의 가공 및 유통단계까지 일괄관리하고 있는 계열화법인의 경우 즉석식품의 소비확대와 육가공기술의 발달에 따라 축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2차 가공품 생산비율이 확대되어 향후 특례규정에 의한 축산업 수입금액의 비중 70/100이상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차 가공품 생산확대에 대한 대비로 현 특례규정에서 정의되고 있는 축산물의 정의에 대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차 가공품의 생산은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2차 가공품의 생산량이 증가하여 전체 매출액의 30/100을 초과하게 되면 현 특례규정에서 정한 축산업 주업법인 요건을 갖출 수 없게 된다. 계열화사업체의 경우 사료의 구매는 법인이지만 주 사용처는 계열농가이며, 계열화사업체의 주 목적이 축산물의 가공판매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축의 생산과 축산물가공·유통을 일괄적으로 경영하는 사업체에게 축산물의 가공판매 비율에 따라 사료의 영세를 적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이에 대한 제도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축산물은 부가가치세법상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단순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산물로 정의되기 때문에 돈가스나 너겟 등으로 축산물을 가공할 경우 2차 가공품인 제조업산물로 인정되어 축산물 매출액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향후 이러한 세제지원은 국민의 납세의무 감면 또는 경감에 따른 조세수입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정당성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타당성과 당위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료원료곡물 도입가격의 급등에 따라 배합사료가격의 인상요인을 세액지원으로 모두 해결할 수는 없으며 사업업체도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유통·영업비용의 절감, OEM 사료생산 확대 등을 통한 사료업체 간의 자율경쟁으로 사료가격 인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㉟